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83
----------	-----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2. 5. 성백진 의원 발의(찬성자 10명)
2. 회부일자 : 2016. 2. 11.
3.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2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성백진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의료원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만 하던 것이 승인을 받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법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기여하기”를 “이바지하기”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100분의50미만”을 “50퍼센트미만”으로 하고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현저하게”를 “뚜렷하게”로 하며 “명할”을 “요구할”로 하고 “급부”를 “지급”으로 하며 “실비”를 “실제 비용”으로 하고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의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의 취지 및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 중 미반영 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구 수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자구 수정 관련 신규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제1조 중	<u>기여하기</u> <u>의하여</u>	<u>이바지하기</u> <u>따라</u>
제2조 중	<u>법률</u> <u>의한</u>	<u>법</u> <u>따른</u>
제3조 중	<u>법률</u> <u>의하여</u> 100분의50미만	<u>법</u> <u>따라</u> 50퍼센트미만
제4조제1항 중	<u>얻어</u>	<u>받아</u>
제5조제1항 중	<u>개시</u>	<u>시작</u>
제5조제3항 중	<u>의하여</u> <u>현저하게</u> <u>명할</u>	<u>따라</u> <u>뚜렷하게</u> <u>요구할</u>
제6조제1호 중	<u>급부하거나</u> <u>급부하는</u>	<u>지급하거나</u> <u>지급하는</u>
제7조 중	<u>동법률</u> <u>의한</u> <u>실비를</u>	<u>법</u> <u>따른</u> <u>실제비용을</u>
제8조제2항 중	<u>얻어야</u>	<u>받아야</u>
제8조제3항 중	<u>개정하고자 하는</u>	<u>개정하려는</u>
제9조 중	<u>설치·운영하고자 할</u> 제14조 내지 제19조를	<u>설치·운영하려는</u>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제10조 중	<u>의하여</u>	<u>따라</u>

2 주요사항 검토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규정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항만 명시한 것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의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제16조를 근거로 조항의 제목을 ‘사업계획서 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로 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로 바꾸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그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

현행	개정안
<p>제5조 (사업계획)</p> <p>① 의료원장은 <u>사업계획을</u> 시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u>편성하여야</u>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사업계획 또는 당해사업계획의 변경이</u> 이사회 <u>의결을 거쳐</u> 확정된 때에는 <u>지체없이</u>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 (사업계획 등)</p> <p>① ----- <u>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u> ----- -----<u>시작</u> ----- <u>작성하여</u> 이사회 <u>의결을 거친 후</u>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u>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u>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u>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u> 이사회 <u>의결을 거친 후</u>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u>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u> 2. <u>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u></p>

시하고 있는데,

- 이는 현행 조례에서는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 제16조제1항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을 ‘시장 보고’에서 시장의 인가로서 동의를 얻는 ‘시장 승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 현재 「서울의료원 정관」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이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시, 시장 승인을 받을 것을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만큼 미반영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려는 동 개정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최초 제출 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현행 조례에는 없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의료원법」 제16조제2항²⁾의 신설규정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2)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백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83
----------	-----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5일

발 의 자 : 성백진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진철, 김창수, 김동윤,
김태수, 오봉수, 김영한, 김인제,
최관술, 이신혜 의원(10명)

1.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만 하던 것이 승인을 받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법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기여하기”를 “이바지하기”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100분의50미만”을 “50퍼센트미만”으로 하고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현저하게”를 “뚜렷하게”로 하며 “명할”을 “요구할”로 하고 “급부”를 “지급”으로 하며 “실비”를 “실제 비용”으로 하고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의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하기”를 “이바지하기”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법률”을 “법”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법률”을 “법”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100분의50미만”을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언어”를 “받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사업계획”을 “사업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사업계획을”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로 하며,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편성하여야”는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제5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현저하게”를 “뚜렷하게”로 하며 “명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급부하거나”를 “지급하거나”로 하고 “급부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동법률”을 “법”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실비를”을 “실제비용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개정하고자 하는”을 “개정하려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설치·운영하고자 할”을 “설치·운영하려는”으로 하고, “제14조 내지 제19조를”을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u>이바지하기</u> ----- ----- <u>따</u> <u>라</u> ----- ----- -----.</p>
<p>제2조 (명칭)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u>법률</u>”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u>의한</u>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제2조 (명칭) ----- ----- ----- <u>“법”</u> ----- ----- <u>다른</u> ----- ----- -----.</p>
<p>제3조 (임원) <u>법률</u> 제8조제6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u>100분의 50미만</u>으로 한다.</p>	<p>제3조 (임원) <u>법</u> ----- ----- <u>따라</u> ----- ----- <u>50퍼센트미만</u>으로 ----- -----.</p>
<p>제4조 (부설연구소 설립) ① 의료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u>얻어</u> 의료원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p>	<p>제4조 (부설연구소 설립) ① ----- ----- ----- <u>받아</u> ----- -----.</p>
<p>제5조 (사업계획) ① 의료원장은 <u>사업계획을</u> 시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u>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u> 한다.</p>	<p>제5조 (사업계획 등) ① ----- <u>사업계획서 및 예산</u> <u>서를</u> ----- ----- <u>시작</u> ----- <u>작성하여 이사</u> <u>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u> <u>한다.</u></p>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또는 당해사업계획의 변경이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생략)
 1.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급부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로 급부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제7조 (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이사 및 동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생략)
 ②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③ ----- 따라 -----
 ----- 뚜
 렷하게 -----
 ----- 요구할 -----

 -----.

제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현행과 같음)
 1. -----
지급하거나 ----- 지
급하는 -----

제7조 (수당 등) -----
 ----- 법 -----
 ----- 따른 -----

 ----- 실제비용을 -----
 -----.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받아야 -----.

<p>1.~3. (생략)</p> <p>③ 의료원은 정관을 <u>개정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③ ----- <u>개정하려는</u> ----- ----- -----.</p>
<p>제9조(시민참여위원회) 의료원장은 시민참여위원회를 <u>설치·운영하고자</u> 할 경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u>제14조 내지 제19조를</u> 준용한다.</p>	<p>제9조(시민참여위원회) ----- ----- <u>설치·운영하려는</u> ----- ----- <u>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u> 규정을 -----.</p>
<p>제10조 (과태료)</p> <p>① 시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u>의하여</u> 다음 각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 (과태료)</p> <p>① ----- <u>따라</u> ----- ----- ----- ----- -----.</p>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없음

4. 작성자

성백진 서울시의원